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40호
의결 년월일	2009. 10. 13. (제155회)

제의년월일 : 2009. 6. 25.

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2009.4.1.)됨에 따라
-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과 기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안 제3조)
(행정안전부 표준안 적용)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행위시 윤리심사 대상.(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 겸직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 참고사항 :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별지 서식]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택일) 연월	원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인)

부천시의회의장 귀하

현행 조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08. 17 조례 제2176호

개정 2008. 10. 02 조례 제23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위반 사실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